

대신대학교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수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, 유학 등 교류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 3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

제 4조(지원대학)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 5조(지원자격) 본교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(이하 “지원자” 라 한다)은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이미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3.0 이상, 대학원과정은 3.5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 6조(수학신청)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대학장에게 제출한다.

1. 수학허가원(별지 1호 서식)
2. 수학계획서
3. 지도교수 추천서
4. 기타 필요한 서류

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,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7조(수학허가) 수학은 소속학부(과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

제 8조(등록 및 학기의 인정) ① 학술교류협정은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,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, 등록학기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9조(교과목의 이수)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수학신청의 취소) ①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수학신청 취소 절차는 이 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.

③ 계절수업 수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취득학점)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7학점,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, 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
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수업 학점을 포함하여 학사과정은 36학점,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한다.

제12조(수학기간)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위과정별로 2개 학기(1년) 이내로 하며, 계절수업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 (학점의 인정 기준)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성적증명서 및 이수기록 등을 근거로 본교의 성적산출방식에 따라 환산
2.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

②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14조 (학점인정 절차)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 서류를 지도교수와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② 교무처장은 소속 학과의 회의 심의를 거쳐서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.

③ 총장은 전항의 신청내용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에 “대학(교) 수학 이수학점”을 표시하여 등재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4년 3월14일부터 시행한다.

